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 요

- 용역명: 국가시범도시 확산을 위한 터키 가지안텝 스마트시티 통합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60일
- 예정금액: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목 적

-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기재부 계약제도과-665호, 2020.4.9.)에 따라 조속한 용역 추진 필요
- 과업성과품 제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